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49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최기상 · 정태호 · 권칠승
이해식 · 김남근 · 김남준
김영환 · 이성윤 · 유동수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현실에 비해 지급기한이 길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신청,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납품업자 및 입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의 제약,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내로 단축하되,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품의 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③·④ (생략)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 ----- ----- ----- <u>15일</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25일</u> ----- ----- ----- <u>. 다만, 상품의 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